

객과식진도하습

민법및민사특별법 2회 채희대 교수

(03/16)

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 ③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④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더라도 기 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3. 다음은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 할 권한은 없다.
- ④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몰 랐다면 반사회질서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 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이 인정된다.



객관식진도학습

민법및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

2회 (03/16)

- 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③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6.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 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객관식진도학습

민법및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

2회 (03/16)

객관식진도학습 정답

1. ③

③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2. ③

③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철회권을 미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3. (3)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4. ①

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2.27, 97다45532).

5. ②

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6. (3)

- 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수 없다.
- ②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 그 의사표시로서 이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제132조).
- ③ 제134조
- ④ 상대방의 철회가 있은 후에는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